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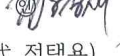

의 결 안

2015년도 기계분야 제 1 회 위 원 회			
년 월 일	2015년 7월 27일	의안번호	제 1호
의 제	인증신제품 적용심사 <주방용자동소화장치(약제누설감지 및 오작동방지)>		

1. 제안부서 : 기전설계팀
2. 제안근거 :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운영기준(2014. 1)
3. 제안사유 : 해당 보유업체로부터 신제품 적용 요청이 있어 부의
4. 심사.의결사항 : 적용 보류
 - 본 인증신제품은 기능 및 성능에 있어 현재 우리공사 설계기준(시방서 포함)에 적합한 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함.
 - 다만, 제품단가가 타 제품단가에 비해 현저히 높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구매면제 요청을 하거나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단가를 찾을 때까지 본 위원회의 의결을 보류.

2015년도 기계분야 제1회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심사.의결하였음.

2015년 7월 27일

위 원 장	서비스혁신처장	이 우 필	
부위원장	기전설계팀장	김 학 진	
위 원	기전총괄팀장	이 원 풍	
위 원	기계공사팀장	김 혁 재	
위 원	기계팀장	최 임 규 (代 정택용)	
위 원	견적발주팀장	김 길 상 (代 강대호)	